

#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안

(김원중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018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8월 12일

발 의 자: 김원중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원태, 김지향,  
김혜영, 남창진, 문성호,  
박춘선, 서상열, 송경택,  
유만희, 윤기섭, 이상욱,  
이원형, 이종환, 장태용,  
최민규, 허 훈 의원(20명)

## 1. 제안이유

-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미술 창작 및 향유를 촉진하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 2. 주요내용

- 가. 미술진흥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미술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와 유통질서 조성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미술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미술진흥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미술 창작 및 향유 촉진을 통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술과 미술품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술진흥 사업) 시장은 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미술 창작 및 전시 지원
2. 미술 창작 및 미술품의 전시·보존·보관을 위한 공간 확충
3. 지역 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간 협력·교류 지원
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

5.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미술 창작·기획·전시와 미술품 유통·감정, 미술품 등의 관리·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기술 개발 지원

7. 그 밖에 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법인 또는 단체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등) 시장은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미술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시장은 서울특별시 미술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5조(미술진흥 사업)	×	기시행 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sup>1)</sup>
2	제6조(법인 또는 단체 지원)	×	
3	제9조(표창)	△	표창장 등 제작 시 소액의 비용 <sup>2)</sup> 이 발생할 수 있으나 표창대상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함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동 개정안 제9조(표창)에 따라 추가적 비용 발생의 여지가 있으나, 관련부서 확인결과(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정책과) 표창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현재로서는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1) 관련부서 확인결과(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정책과)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문화재단(붙임 참조)에서 기시행하고 있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기시행 사업] 2024년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 : 231,313천원
- [기시행 사업] 2024년 <서서울미술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 305,776천원
- [기시행 사업] 2024년 <서서울미술관 건립> : 13,141,500천원
- [기시행 사업] 2024년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 55,757,160천원

2) 사업시행 시 연례반복적 소요비용으로 표창대상 수에 따라 향후 예산(사무관리비)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 비용추계 대상으로 판단함  
⇒ 다만 관련부서 확인결과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합리적 비용추계가 곤란함

[붙임] 서울문화재단 사업총괄표

구분		2024년 본예산	2023년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b>사업비 계</b>		<b>43,082,536</b>	<b>43,533,279</b>	<b>△450,743</b>	<b>△1.0%</b>	
예술창작활성화		23,082,000	23,434,666	△352,666	△1.5%	
예술기획 및 창작지원		15,145,000	15,236,800	△91,800	△0.6%	
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 예술창작지원 (시각 외 기반지원)	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	-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예술인/단체 창작지원	4,121,000	4,091,000	30,000	0.7%
	예술창작지원 (시각 외 기반지원)	- 시각, 다원, 문학 등 예술인/단체 창작지원	6,474,000	6,444,000	30,000	0.5%
	예술지원체계 운영 관리	- 예술지원 정책선도 및 통합운영 관리 체계화	870,000	870,000	0	0.0%
	청년예술지원	- 데뷔 경험 없는 청년예술인 발표 지원	460,000	460,000	0	0.0%
	원로예술지원	- 만65세, 활동경력 25년 이상 예술인 창작지원	470,000	480,000	△10,000	△2.1%
	융합예술플랫폼	- 융합예술 창제작 지원 및 서울예술소셜 운영	879,000	879,000	0	0.0%
	미래예술창작지원	- 신진분야 융합예술분야 직·간접 창제작지원	239,000	400,000	△161,000	△40.3%
	유망예술지원	- 데뷔 3년 이상 10년 이하 예술인/단체 창작지원	299,000	250,000	49,000	19.6%
	문래예술공장	- 교류·협력 및 학술행사 등 융합예술플랫폼 운영	483,000	482,800	200	0.0%
	청년예술청	- 청년예술인 당사자 주도형 커뮤니티 구축	850,000	880,000	△30,000	△3.4%
	대학로기반 공간사업 운영		4,394,000	4,145,139	248,861	6.0%
예술청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예술청 (서울예술인지원센터)	- 서울예술인종합지원 플랫폼 운영	1,200,000	1,070,000	130,000	12.1%
	대학로극장 퀴드 무대 기술 운영 및 관리	- 대학로극장 퀴드 무대기술 운영 및 관리	390,000	271,139	118,861	43.8%
	대학로극장 퀴드 공연 사업운영	- 창작초연중심 1차 제작·유통 극장 운영	1,900,000	1,900,000	0	0.0%
	서울연극센터	- 연극창작 직·간접 지원 및 공연예술 정보제공	904,000	904,000	0	0.0%
창작공간기반 사업운영		3,543,000	4,052,727	△509,727	△12.6%	
종료	금천예술공장	- 시각예술 레지던스 운영 및 창작지원	630,000	629,513	487	0.1%
	신당창작아케이드	- 공예·디자인 레지던스 운영 및 창작지원	558,000	557,600	400	0.1%
	서울무용센터	- 무용예술 분야 레지던스 운영 및 창작지원	610,000	610,000	0	0.0%
	서교예술실험센터	- 2023년부 운영종료	0	670,000	△670,000	△100.0%
	연희문학창작촌	- 문학 분야 레지던스 운영 및 창작지원	600,000	500,614	99,386	19.9%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 장애예술가 레지던스 운영 및 창작지원(시각)	615,000	585,000	30,000	5.1%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 장애예술인 창작지원(8개 장르)	530,000	500,000	30,000	6.0%

자료 : 서울문화재단 서울시의회 제322회 주요업무보고 발췌